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4년 11월 30일

나. 제안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4년 12월 7일

라. 상정일자 : 2004년 12월 22일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김 해 운

나. 제안이유

○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및안전
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와 재난관리법에 의거 제정된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함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공포 : 2004. 3. 1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공포 : 2004. 5. 29

○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통합운영·관리

다.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매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야 함(제2조)
- 기금의 적립은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가능토록 운용·관리 (제3조)
- 기금의 용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용도와 다음 각호의 용도에만 사용토록 정함 (제6조)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와 재난관련 장비 구입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지원(70% 이하,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회계공무원을 지정 (제8조)
 - 기금운용관 : 자연재난업무 담당국장
 - 기금출납원 : 자연재난업무 담당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등을 심의 (제9조 및 제10조)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연2회 개최 (제11조)
- 시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 의회에 제출

라. 참고사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정 석 광

-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에 의거 제정된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운영·관리코자 함이며,
- 주요내용으로는
 -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매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고,
 - 기금의 적립은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 가능토록 운용·관리하되,
 - 기금의 용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용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와 재난 관련장비 구입, 그리고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의 용도에만 사용토록 정하였으며,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지원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